

의안번호	제 호	의결사항
의결 연월일	2020. . . (제 회)	

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
통칙 일부개정령안

제출자	국무위원 ○○○ (행정안전부장관)
제출 연월일	2020. . .

법제처 심사 전

1. 의결주문

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.

2. 제안이유

행정환경 변화에 따라 정부조직 운영의 자율성을 제고하고 각 부처 조직운영 성과 향상을 위해 필요한 제도를 개선·보완하는 한편,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·보완하려는 것임.

3. 주요내용

가. 실장·국장의 조직관리 자율성 확대(제4조의2제2항제1호~제3호)

직제에 규정된 실장·국장을 보좌하는 정책관 등 보좌기관의 소관업무와 명칭을 직제 시행규칙에서 정하도록 위임함

나. 직제 등 개정 요구시 제출서류 근거 명확화(제10조)

부처에서 직제 등 개정요구시 제출하는 서류를 현행에 맞게 규정

다. 별도정원 기간연장 협의 근거 마련(제24조의2제1항제1호)

별도정원의 1년미만의 기간연장 협의요건에 대해 명시적으로 근거를 마련함.

라. 총액인건비제 팀장 보임 범위 확대(제29조제3항~제5항)

소속기관의 경우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한 과단위 한시적 보조·보좌기관의 장을 6급 공무원으로도 보할 수 있도록 함.

4. 주요토의과제

없 음

5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생 략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다. 합 의 : 관계부처와 합의되었음

라. 기 타 : 1) 신·구조문대비표, 별첨

2) 입법예고(2020. 2. 00. ~ 2. 00.) 결과, 특기할 사항
없음

3) 행정규제 :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, 이견 없음
- 규제 신설·폐지 등, 없음

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일부개정령안

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4조의2제2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, 같은 항 제2호부터 제6호까지를 각각 제4호부터 제8호까지로 하며, 같은 항에 제2호 및 제3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1. 법 제2조제4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과의 설치와 분장 사무
2. 법 제2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실장·국장을 보좌하는 보좌기관의 명칭과 소관사무
3. 법 제2조제5항의 단서에 의한 과에 상당하는 보좌기관의 설치와 소관사무

제10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다음”을 “직제 등의 안, 직제 등 개정요구서 및 기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1호, 제2호 및 제4호를 각각 삭제한다.

제24조의2제1항제1호 중 “과견근무:”를 “과견근무 및 그 기간의 연장(1년 미만 포함):”으로 한다.

제29조제3항 후단을 삭제하고, 같은 조 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, 같은 조 제5항 중 “제4항”을 “제3항”으로, “보좌기관을 운영하기 위해 배정하는”을 “보좌기관에 4급 정원을 배정하여 운영하는 경우 그”로 한다.

④ 제3항의 경우 제12조제4항 및 제14조제3항에도 불구하고 한시적
보조기관 및 보좌기관의 장은 5급공무원으로 보할 수 있다. 다만 소속
기관의 경우 6급 공무원으로도 보할 수 있다.

부 칙

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4조의2(직제시행규칙) ① (생략)	제4조의2(직제시행규칙) ① (현행과 같음)
②직제시행규칙을 두는 경우에는 다음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.	②----- ----- --.
1. 법 제2조제4항 단서 및 제5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과 또는 이에 상당하는 보좌기관과 그 분장업무	1. 법 제2조제4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과의 설치와 분장 사무
<신 설>	2. 법 제2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실장·국장을 보좌하는 보좌기관의 명칭과 소관사무
<신 설>	3. 법 제2조제5항의 단서에 의한 과에 상당하는 보좌기관의 설치와 소관사무
2. ~ 6. (생략)	4. ~ 8. (현행 제2호부터 제6호까지와 같음)
제10조(직제등의 개정요구 등)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당해 기관과 그 소속기관의 기구의 개편과 정원의 조정을 위한 직제 등을 제정 또는 개정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서류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	제10조(직제등의 개정요구 등) 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 <u>직제 등의 안, 직제 등 개정요구서 및 기타 행정안전부장</u>

[illegible]

다.

1. 「국가공무원법」 제32조의4 및 제43조제2항에 따른 1년 이상의 파견근무: 「공무원임용령」 제41조제3항 본문에 따른 파견의 협의 시

2. 3. (생략)

② (생략)

제29조(총액인건비제의 운영에 관한 특례) ①·② (생략)

③ 제17조의3에도 불구하고 총액인건비제를 운영하는 중앙행정기관에는 총리령 또는 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한시적 보조기관 및 보좌기관을 둘 수 있다. 이 경우 한시적 보조기관 및 보좌기관의 장은 4급 또는 5급 공무원으로 보할 수 있다.

④ 제3항 후단에도 불구하고 현행 제도와 절차를 대폭 개선하는 업무 등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유형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설치하는 한시적 보조기관 및 보좌기관의 장은 4급 공무원으로 보할 수 있다.

⑤ 제4항에 따른 한시적 보조기

--.

1. -----

----- 파견근무 및 그 기간의 연장(1년 미만 포함): -----

2. 3. (현행과 같음)

② (현행과 같음)

제29조(총액인건비제의 운영에 관한 특례) ①·② (현행과 같음)

③ -----

--. <후단 삭제>

④ 제3항의 경우 제12조제4항 및 제14조제3항에도 불구하고 한시적 보조기관 및 보좌기관의 장은 5급공무원으로 보할 수 있다. 다만 소속기관의 경우 6급 공무원으로도 보할 수 있다.

⑤ 제3항-----

관 및 <u>보좌기관을 운영하기 위</u> <u>해 배정하는 4급 정원</u>은 중앙행 정기관별 직제 등에 따른 4급 정원의 상한에 포함하지 않는 다. ⑥ (생 략)	----- <u>보좌기관에 4급 정원을</u> <u>배정하여 운영하는 경우 그 --</u> ----- ----- --. ⑥ (현행과 같음)
--	---

< 의안 소관 부서명 >

행정안전부 조직기획과	
연 락 처	(044) 205 - 2307